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4년 10월 2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
(영문명) MUST Investment Advisory.
(홈페이지) <http://mustinvestmen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-14 삼성엔지니어링 12층
(전 화) 02-578-5080

대 표 이 사 : 공동대표이사 김두용, 공동대표이사 구은미

담 당 임 원 : (직 책)공동대표이사
(성 명)구은미 (전 화)02-578-5080

작 성 자 : (직 책)경영기획팀장
(성 명)박상은 (전 화)02-578-508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주요
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,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, 같은 항 제 2 호다목,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계열회사 변경

1. 변경내용		계열회사 추가			
2. 계열회사내용	회사명	하나머스트 2 호기업인수목적			
	대표자	채이배			
	주요 재무현황	자산총액(원)	4.0 억	자본총액(원)	4.0 억
		부채총액(원)	-	자본금(원)	0.4 억
주요사업	코스닥시장 상장 후 다른 회사와 합병				
3. 계열그룹명		-			
4. 변경사유		추가			
5. 계열회사수	변경전(사)	1			
	변경후(사)	2			
6. 변경일자		2014.10.2			
7. 확인일자		-			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한시적 계열회사 편입			

<기재상의 주의>

주 1) 계열회사가 추가, 제외되어 계열회사수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때 신고한다.

주 2) 동일기업집단에 속한 상장법인이 “계열회사의 변경” 신고를 하면서 동 서식의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동일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계열회사를 기재하는 경우 당해 계열회사는 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주 3) “변경내용”은 계열회사 추가 또는 계열회사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
주 4) 상기사항 외의 계열회사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
주 5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